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
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병준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11월 27일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11월 29일

3. 제안이유

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를 통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재해원인 조사·분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가.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(안 제3조 및 안 제8조)

- (구성) 조사단 구성 대상 추가(관계 공무원) 및 위촉 대상 전문가 확대*

* 관계분야 학·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⇒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

- (지원) 원인조사 지원 및 지원요청 범위 확대

(인근 시·도 ⇒ 다른 시·도)

나. 지진재해원인조사단(조사단장)의 임무 및 권한 조정

(안 제3조 및 안 제4조, 안 제7조)

- (임무) 지진재해경감대책 수립 시 원인조사단의 임무를 지원

역할로 명확하게 제시

- (권한) 조사단원 임명, 조사단장의 추가 연구실시 등 권한을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으로 조정

다.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관련법률 명시 및 용어·자구 수정(전체)

- 충청북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⇒ 충청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*
- *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개정('16. 1. 25.)으로 원인조사단 명칭 변경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20조제5항에 따른 지진·화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지진·화산재해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위한 충청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보다 간단명료하게 규정함.
 - 안 제2조는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운영 시기를 규정함.
 - 안 제3조는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함에 있어 관계공무원과 위촉대상전문가를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으로 확대하여 전문적 인력이 구성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- 안 제4조는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임무를 상위법령과 맞추어 명확하게 규정하였음.
- 안 제5조는 조사기간과 현지조사 절차 등에 관하여, 안 제7조는 현지조사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입법예고('19. 10. 29.~'19. 11. 19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20조 제5항에 따른 지진·화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·화산재해 원인과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위한 충청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